

제주지방법원 2017. 11. 1 선고 2017나1013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17. 11. 1 선고 2017나10138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16. 12. 30 선고 2015가단55341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 문중회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11. L

변론 종결 2017. 9. 27.

판결 선고 2017. 11. 1.

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. 12. 30. 선고 2015가단55341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M에게, 제주시 N 대 205m²(이하 '이 사건 1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, 피고 B는 제주지방법원 1973. 12. 4. 접수 제174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피고 C은 3/2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D, E, F, G, H, I, J, K, L은 각 2/21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73. 12. 19. 접수 제187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○ 대 116m²(이하 '이 사건 2토지'라 하고, 이 사건 1, 2토지를 통칭하여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, 피고 C은 3/21 지분에 관하여, 피고 D, E, F, G, H, I, J, K, L은 각 2/21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1973. 12. 4. 접수 제17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피고 B는 제주지방법원 1973. 12. 19. 접수 제187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법원 2000. 4. 10. 접수 제230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"제3의 나.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"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재판장판사김진영

판사채희인

판사성준규